

관리번호	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
2 - 10	

농산유통과장 곽동일 ☎3780 유통계장 소형섭 ☎5256 담당자 황현옥 ☎5252

사업주체	사업시기	사업기간	사업구분	사업비
자체	단기	임기 내	신규	비예산

현황 및 정책목표

- 익산시에서 생산·가공된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 권장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판로확보에 따른 농가소득증대,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,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- 로컬푸드, 학교급식의 익산시농산물 우선이용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공공기관, 단체급식,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이 가능하도록 근간 마련하고자 함

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액	임 기 내			2019년 이 후
			2016년	2017년	2018년	
총 계	해	당	없	음		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					

그간 추진사항

- 정례 어울림장터(익산시 농산물 판매) 운영
-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신축·운영
- 초·중·고 학교급식에 익산시 농산물 우선 이용
- 조례안 입법 예고 : 2016. 6월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6. 7월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 마련 후 조례제정 검토 필요
- WTO 정부조달협정(GPA) 전문 및 제3조(내국민대우 및 무차별)에 따르면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, 규정, 절차 및 관행이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,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며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(단, 학교급식은 제외)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극히 제한이 될 수 있음
- 『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

□ 금후 추진계획

- 조례안 의회 상정 : 2016. 8월
- 조례 공포 : 2016. 9월

□ 연도별 목표 및 사업내용

구 분		확인지표(목표)	사 업 내 용
임기내	2016	· 검토 및 조례안발의,제정	·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
	2017		
	2018		
임 기 후			